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8142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8142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8. 8. 27 선고 2008나749 판결

광주지방법원 2007. 12. 6 선고 2007가단3678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피고, 피상고인 1. 신용보증기금

2. 기술신용보증기금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08. 8. 27. 선고 2008나749 판결

판결선고 2009. 1. 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들이 1998. 8.경 소외 A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나누어 각 보증기한을 1년으로 정하여 신용보증하였다가 잔여 대출금의 지급기일이 연장됨에 따라 2006. 2. 9.까지 각 8회에 걸쳐 잔여 대출금에 대한 보증기한을 연장하여 왔는데, 이에 적용되는 신용보증약관에 의하면, 보증부대출의 기한이 보증기한보다 단기인 경우 보증기한은 대출기한과 동일하게 변경되고(제4조 제2항), 채권자는 피고들로부터 서면에 의한 신용보증조건의 변경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보증부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없으며(제5조 제1항, 제2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피고들이 보증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제18조 제5호 및 그 면책기준), 피고들은 위 보증기한 연장 과정에서 2003. 8. 6.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기한을 2004. 8. 10.로 변경한다는 서면 통지를 받은 다음 그 무렵 위 대출금의 대출기한을 임의로 2004. 2. 11.까지만 연장하였다가 2004. 2. 11.에 이르러 별도의 보증기한 연장에 관한 서면 통지를 받지 아니한 채 대출기한을 2004. 8. 10.로 다시 연장하였고, 2004. 2. 9. 피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기한을 2005. 2. 11.로 변경한다는 서면 통지를 받고도 그 무렵 위 대출금의 대출기한을 임의로 2004. 8. 10.까지만 연장하였다가 2004. 8. 10.에 이르러 보증기한 연장에 관한 서면 통지를 받지 아니한 채 대출기한을 2005. 2. 11.로 다시 연장하였는바, 피고들의 보증기한은 위 약관 제4조 제2항에 따라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2004. 2. 11.로,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2004. 8. 10.로 자동단축되었고, 그 직후 피고들로부터 다시 보증기한을 연장한다는 서면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위 약관 제5조, 제18조와 면책기준에 따라 각각 보증책임을 면하였으며, 이는 피고들이 그 후 자신들이 정한 바 있던 보증기한이 만료될 무렵에 이르러 보증기한을 연장한다는 서면통지를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보증채무의 면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는 피고들의 담당자가 보증기한 내에서는 대출기한을 단축하여 다시 대출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바 있으므로 당시 신용보증조건변경통지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나, 원고의 주장 자체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의 담당자가 위와 같이 대출기한을 재연장할 때에는 별도로 신용보증조건변경통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72. 7. 11. 선고 72다488 판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다1571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들이 2006. 2. 9. 원고에게 각 신용보증조건변경통지서를 교부함으로써 피고들의 신용보증채무를 추인하거나 새로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피고들이 2006. 2. 9.자 각 신용보증조건변경통지서를 통하여 무효인 신용보증채무를 추인하였다거나 새로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본 다음, 피고들이 원고의 약관 위반 사실을 알고도 보증채무를 부담하려는 의사로 보증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조건변경통지를 보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신용보증조건변경통지서를 보낸 것만으로 무효인 신용보증채무를 추인하였다거나 새로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신용보증조건변경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위 신용보증변경의 통지로서 피고들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새로운 신용보증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착오에 기한 것이므로 취소한다는 피고들의 가정적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약관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후의 신용보증조건변경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은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주 심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능환